

外國 職務發明制度 및 國有特許處理規程 抄

<V>

— 日 本 國 —

國有特許 實施料 算定方式

1. 基本額

實施料率은 基準率×利用率×增減率×開拓率로 算定 하되 이에 앞서 다음의 6個項 중에서 기본액을 各自의 事業에 적절한 것을 選定해야 한다.

- ① 販賣價額 및 生産數量이 明確한 것은 販賣單價에 生産수량을 곱한 것.
- ② 판매가격 및 販賣數量이 明確한 것은 판매단가에 판매수량을 곱한 것.
- ③ 發明考案에 따라 얻은 價値 또는 가치의 增加費用의 輕減을 포함) 全額에 利用件數를 곱한 것.
- ④ 발명고안에 따라 얻은 가치 또는 가치의 증가(비용의 輕減을 포함) 전액에 生産수량을 곱한 것.
- ⑤ 발명고안에 따라 얻은 가치 또는 가치의 증가(비용의 輕減을 포함) 전액에 판매수량을 곱한 것.
- ⑥ 製品을 판매 함으로써 얻은 利益金額

그러나 기본액에다가 실시요를 산정한 결과 그 率이 1% 이상일 때는 10分の 1의 끝수는 2捨 3入 혹은 7사 8입하며 1% 未滿일 때는 100분의 1 미만의 끝수는 4사 5입한다.

2. 基準率

種 別	販賣價額을 基礎로 할 경우	價額 또는 價値의 增加 혹은 利益金額을 基礎로 할 경우
實施價値 上의 것	4%	3%
實施價値 中の 것	3	20
實施價値 下의 것	2	10

3. 利用率

發明 또는 考案(이하 고안으로 統一)이 그 製品에서 占有하는 比率로서 발명이 그 제품의 전부일 때는 100%로 한다.

그러나 방법 또는 方式의 應用이 제품의 一部分일지라도 그 제품 전체가 創意的이고 裝置 또는 物로서 特

許價値가 인정될 때는 利用率을 100%로 한다.

改良發明이나 부분발명의 이용률은 다음 방법으로 算定한다.

- ① 발명의 應用部分價額을 기초로 함이 適當한 것은 그 부분의 價額에 대하여 100%로 한다.
- ② 제품전부의 價額을 기초로 함이 適當한 것은 발명의 응용부분과 產品 전체價額의 비율을 利用률로 한다.

4. 增減率

증감률은 100%를 기준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50% 이내를 더하거나 50% 미만을 줄일 수가 있다.

- ① 公益上 특히 필요할 때
- ② 실시價액이 특히 많거나 적을 때
- ③ 이미 실시되고 매우 高度로 實用化된 것을 다시 다른 곳에 실시하려 했을 때
- ④ 그 외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5. 開拓率

100%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50% 이내를 줄일 수가 있다.

- ① 工業化研究에 巨額의 費用이 所要될 때
- ② 普及宣傳에 巨額의 費用이 所要될 때

註：參考로 民間에서 실시계약을 맺을 때는 國有특허권의 경우와는 달라서 營業상의 配慮가 反映되어 실시로는 力學關係에 따라 定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國有특허실시료의 算定을 위한 여러 要素는 算定의 基本的인 것이므로 民間에서도 실시요를 算定할 때의 算定率로 된다.

試驗研究 등에 종사하는 職員이 직무발명을 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의 사용자인 국가가 承継하였을 때는 발명자에게는 국가에 대하여 代價의 請求權이 발생하게 된다. 이 대가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設定登錄 때의 登錄補償金 및 國庫에 納입된 실시료 등에 따라 定하는 실시보상금의 形式으로 지불된다. 이러한 지 불은 특허청이 管掌하여 豫算措處 등을 강구한다.

한편 등록보상금이나 실시보상금은 발명자 1인에 대하여는 通算해서 각각 150萬圓 限度로 되어 있다.

(끝)